

「조교운영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6. 5. 18. 개정 판 (시행 2026. 6. 1.) → 2026. 6. 18. 개정 판 (시행 2026. 6. 18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99/compare?from=1755&to=177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9:45:1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	제6조의2(재임용 및 평가) <u>조교의 재임용 심사 및 근무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.</u> ① <u>행정효율성과 교육·행정 지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u> ② <u>평가 대상은 재임용을 앞둔 조교로 한다.</u> ③ <u>평가자는 소속 학(부)과장 및 소속 학(부)과 전임교원 1인으로 하며, 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다.</u> <u>구분</u> <u>평가자 1</u> <u>평가자 2</u> <u>계</u> <u>교육조교</u> <u>소속 학(부)과 전임교원</u> <u>(학과장 제외) 1인(50%)</u> <u>소속 학(부)과장(50%)</u> <u>100%</u> <u>행정조교</u> <u>소속 팀장 또는 담당 책임자(50%)</u> <u>소속 부서장(50%)</u> <u>100%</u> ④ <u>평가는 근무태도,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, 평가항목 및 방법은 [별지1]에 따른다.</u> ⑤ <u>평가결과는 재임용 여부 결정 및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</u> ⑥ <u>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/u> <u>평가점수</u> <u>평가등급</u> <u>비고</u> <u>95점 이상</u> <u>S(탁월)</u> <u>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.</u> <u>90점 이상</u> <u>A(우수)</u> <u>80점 이상</u> <u>B(양호)</u> <u>70점 이상</u> <u>C(미흡)</u> <u>70점 미만</u> <u>D(매우 미흡)</u> <u>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	⑦ 평가결과가 D등급인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한다. (신설 2026-06-18)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조교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의2(재임용 및 평가) 조교의 재임용 심사 및 근무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.

① 행정효율성과 교육·행정 지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평가 대상은 재임용을 앞둔 조교로 한다.

③ 평가자는 소속 학(부)과장 및 소속 학(부)과 전임교원 1인으로 하며, 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다.

구분

평가자 1

평가자 2

계

교육조교

소속 학(부)과 전임교원

(학과장 제외) 1인(50%)

소속 학(부)과장(50%)

100%

행정조교

소속 팀장 또는 담당 책임자(50%)

소속 부서장(50%)

100%

④ 평가는 근무태도,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, 평가항목 및 방법은 [별지1]에 따른다.

⑤ 평가결과는 재임용 여부 결정 및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⑥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평가점수

평가등급

비고

95점 이상

S(탁월)

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.

90점 이상

A(우수)

80점 이상

B(양호)

70점 이상

C(미흡)

70점 미만

D(매우 미흡)

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.

⑦ 평가결과가 D등급인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